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4 선고 2018나77960 판결 [주식매매대금 반환 청구]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법조

담당변호사 송철훈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엔

담당변호사 김승모

변론 종결 2020. 3. 31.

판결 선고 2020. 6. 4.

제 1 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30. 선고 2017가단5030579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8,52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10.부터 2020. 6.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8,52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10.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주위적으로 대상청구에 기하여,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1. 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C 주식회사의 주식 중40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확인서 >

C 주식회사의 대주주인 피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본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한다.

(제1조) '갑'이 소유하고 있는 C 주식회사의 주식(총 3,323,730주) 중에서 405,000주는 '을'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제2조) '갑'은 증권거래법에 따른 매각 가능한 시기에 '을'의 요청에 따라 주식시장에서 거래를 하고 제 비용을 공제한 대금을 수령하는 즉시 '을'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제3조) '갑'과 '을'은 본 확인 내용에 대하여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는 위반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확인 당사자는 인감 날인하고, 본 확인서를 2통 작성하여 각각 1통

씩 보관한다.

2003년 1월 9일

갑: 피고 (날인)

을: 원고 (날인)

나. C 주식회사는 2003. 12. 16. 1차로 감자되었고(감자비율 75%), 2005. 2. 16. 2차로 감자되어(감자비율 66.7%) 이 사건 주식은 33,750주로 변동되었다.

다. 피고는 2007. 3. 19. E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주식 33,750주를 포함한 1,431,968주를 매매대금 80억 원(1주당 5,586원)에 매각하고, 2007. 5. 10. 그 대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피고는 갑 제1호증상 피고의 인영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감정인 F의 인영감정 결과에 의하여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원고의 요청이 없음에도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대상청구(손해배상청구)에 따라,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주식 매각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요청이 없음에도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주식 매각대금(또는 그 상당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장에서 이 사건 확인서에 기하여 이 사건 주식 매각대금의 지급을 구한 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그 후 원고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피고가 임의로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였으니 주위적으로 대상청구를,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추가 또는

보충하였으나, 원고 청구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대상청구의 성질은 결국 이 사건 주식을 임의로 매각함에 따른 주식매각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로 봄이 합리적이다)

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주식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① 이 사건 확인서는 C 주식회사가 G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는데 기여한 공로 를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해 준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 매각대금반환청구권의 행사는 합병일인 2002. 12.

1.부터 또는 이 사건 주식의 보호예수기간 2년이 경과한 2004. 12. 1.부터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7. 2.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② 설령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한 2007. 5. 10.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8. 1. 23.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비로소 주위적으로 대상청구를,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다는 취지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으므로, 그때를 기준으로 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민법 제166조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한이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진행하지만, 이행기가 도래한 후 채권자와 채무자가 기한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유예된 때로 이행기가 변경되어 소멸시효는 변경된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이와 같은 기한 유예의 합의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한데, 계약상의 채권관계에서 어떠한 경우에 기한 유예의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볼 것인지는 계약의 체결경위와 내용 및 이행경과, 기한 유예가 채무자의 이익이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13. 선고 2016다2749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아래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 매각대금의 반환청구권의 행사가능시기는 2007. 5. 10.로 봄이 타당하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7. 2. 8.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명백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 ① 이 사건 확인서에 '피고는 증권거래법에 따른 매각 가능한 시기에 원고의 요청에 따라 주식시장에서 거래를 하고 제 비용을 공제한 대금을 수령하는 즉시 원고에 게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제2조).'라고 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증권거래법에 따른 매각 가능한 시기는 대주주의 의무보호예수기간인 2년이 경과한 이후인 2004. 12. 1. 이후 이기는 하다.
- ② 피고는 2004. 12. 1. 이후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한 후 제비용을 공제한 대금을 수령하는 즉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확약하였는데, 원고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는 것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권리자인 원고가 그 매각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주식의 가치는 시기에 따라 등락을 하므로 원고는 가장 유리한 시기를 택하여 매각요청을 할 수도 있다)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 ③ 피고는 원고의 매각요청이 없는데도 2007. 5. 10.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피고 보유 주식을 매각하였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원고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그 무렵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로 인한 대상청구(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④ 원고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7. 2. 8. 주식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재판상의 청구에는 소멸시효 대상인 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 또는 그 권리를 기초로 하거나 그것을 포함하여 형성된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로써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대법원 2016. 10.27. 선고 2016다2514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소장에서 이미 주식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2018. 1. 23.자 준비서면에서는 그 후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그 대상청구 또는 부당이득 주장을 보충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일시에 비로소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매각대금인 188,527,500원(= 33,750주 × 5,58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 매각일인 2007. 5.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6. 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임으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호식, 판사 이종채, 판사 황정수